##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3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전현희·윤종군·추미애

김영환 • 이학영 • 박정현

황운하 • 강준현 • 김동아

황정아 · 남인순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어 비율은 낮으나 고액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직장의 상급자가 아닌 직장 동료도 사적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 ·기준에 따라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 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 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법률 제 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바목 중 "비율"을 "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및 공직 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6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	바		
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u>비율</u> 이상의 주식·	<u>비율 또는 일정 금</u>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	<u> </u>		
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			
체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아.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u>		
	<u>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u>		
	자 및 공직자와 같이 근무		
	<u>하는 사람</u>		
<u>아.</u> (생 략)	<u>자.</u> (현행 아목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